

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전혜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6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7.

발 의 자 : 전혜연, 이진환, 박경원,
박윤옥, 이경숙, 한근수,
정현미, 김지훈(민)

1. 제안이유

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함으로써, 회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
하고 내실 있는 감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변경 (제2조제2항)

-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“매년 제2차” 를 “매년 제1차” 로 변경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5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6. 관련법령 : 덧붙임

남양주시 조례 제 호

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 중 “매년 제2차” 를 “매년 제1차” 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전년도” 를 “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전년도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연도” 를 “다음연도” 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감사) ① (생 략)</p> <p>② 감사는 <u>매년 제2차</u>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, 감사를 실시하는 상임위원회나 감사특별위원회(이하 “감사위원회” 라 한다)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으로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시행한다.</p> <p>③ ~ ⑤ (생 략)</p>	<p>제2조(감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 <u>매년 제1차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-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재정 수반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- 의회사무국 운영전문위원 서용관

☑ 「지방자치법」

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,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.

☑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한다.